

# Jisung Horizon Newsletter

January 2010 Vol.3. No.16

## 01 법률칼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세법 II  
- 2009년 조기도입기업의 법인세 신고 -  
(구상수 회계사)

## 03 Vietnam LIVE!

-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져...  
(김주현 변호사)

## 06 열려라 중국

- 중국의 변호사 제도  
(박영주 변호사)

## 12 생생 러시아

- 러시아주택분양 제도 개관 I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15 주목! 이 판례

-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흠결한 계약의 효력

## 19 최신법령

- 법인의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등
-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시 처벌 대상 확대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적용 배제 등

## 22 신년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2010년  
신년사

## 24 업무동향

- 지평지성,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현대중합상사  
매각관련 법률자문 제공
- 지평지성, 포스코를 대리하여 케이파워 인수관련  
법률자문 제공

## 27 지평지성 단신

-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0년 시무식 개최
- 최승수 변호사, 소프트웨어인 자회사 소프트웨어  
자문위원으로 위촉
- 최승수, 이소영 변호사, '저작권 교육연수사업'의  
저작권 전문강사로 위촉
- 김성수 변호사, 2010년 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재위  
촉
- 임성택 변호사, 『2009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 임성택 변호사,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기자회견'  
참석 및 토론
- 김범희 변호사, 로앤비 기업법무과정의 '직무발명  
과 영업비밀, 브랜드 분쟁' 강의
- 박성철 변호사,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법무 담당자 워크샵』 참석 및 발표

## 31 영입인사

- 이병주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기획특집)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세법 II - 2009년 조기도입기업의 법인세 신고 -



구상수 회계사

2009년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도입한 기업들로는 STX팬오션, KT&G 등 약 10개 기업들이 있으며, 2010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약 20여개 회사들이 조기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도입한 기업들은 빠르면 2010년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 재무제표를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그간 과세관청의 명확한 입장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서 유권해석(법인세제과-1069, 2009. 12. 11.)을 통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들은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및 신고시 기존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신고서에도 동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및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재무제표가 K-GAAP에 따라 적절히 작성된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초 2009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맞게 법인세법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나,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며

서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법인세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9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도입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기 위해 기존의 K-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하므로 장부작성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록 외부감사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K-GAAP에 따라 적절히 작성된 경우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K-GAAP에 따랐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위험과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의 작성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장부와 K-GAAP에 따른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 역시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JS-Horizon

(Vietnam LIVE!)

##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져...



김주현 변호사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을 할 때 필요한 서류중의 하나가 사무실임대계약서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없었던 관계로 법인설립허가신청시 아파트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아파트를 사무실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건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무실로 등록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현실도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 투자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비용절감의 필요가 있을 때 아파트를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건설부는 지난 2009년 11월 19일자로 발표된 공문서(OFFICIAL CORRESPONDENCE NO. 2544/BXD-QLN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REGARDING IMPLEMENTATION OF PROVISIONS ON MANAGEMENT AND USING OF APARTMENT DATED ON NOVEMBER 19TH 2009)를 통해 하노이시, 호지민시 등 6개 지방정부에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해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향후 아파트를 사무실로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 공문서는 그동안 아파트 소유자들에 의해 주거용 아파트가 사무실, 제조시설, 사업장 등으로 무단 변경되어 사용해온 사례가 많고 이러한 무단 변경 사용은 사용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며, 법령에서도 소유자 또는 제3자가 본래 사용목적에 반하여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고, 나아가 주거용 건물을 사무실, 제조시설, 사업장 등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편과 무질서를 야기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아파트 개발허가를 내준 해당 성정부는 투자자 및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아파트의 유지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안내를 해줌으로써 투자자와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층 빌딩의 사용목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오피스를 주거구역과 분리할 수 있으며, 오피스를 사업용도에 맞게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오피스가 관련규정 및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 공문서가 발부된 배경에는 그동안 공급부족사태가 빚어졌던 오피스건물들의 공급이 최근 활발해진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노이지역만 보더라도, 작년부터 시내 외곽을 중심으로 베트남 로컬 투자자들이 개발하는 오피스건물의 신축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오피스건물의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건설부의 위 공문서가 발표된 후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허가를 담당하는 하노이 DPI(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서는 위 공문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지난 2009년 12월 중순경부터 신규투자허가 발급 시 아파트를 사무실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투자허가신청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은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이 사무실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 공문서는 주거용 아파트에 대해 사무실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무실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또 위 공문서는 신규로 투자허가를 받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까지는 기존에 투자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확대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아파트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S-Horizon

(열려라 중국)

## 중국의 변호사 제도



박영주 변호사

### 들어가면서

비슷한 듯 다른 것이 많은 나라 중국.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 기업들의 활동과 개발사업이 왕성한 나라. 이것이 짧지 않은 기간 연수를 위해 찾아온 중국에 대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친해진 중국 친구들이 나와 같은 변호사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인식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양학을 강의하는 N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변호사직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나 서구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변호사는 정치지위가 높지 못하고 사회이미지가 좋지 못하며 집단인식이 강하지 못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변호사의 법적 지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2008.8. 최송자)."

한국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한 중국변호사의 언급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인식은 왜 이리 부정적인 것일까요? 아마도 1949년 신 중국 성립 이후 거의 30년간 제대로 된 변호사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중국에서의 변호사제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 1. 중국 변호사 제도의 변천

국민당의 중화민국 치세에서도 서구적인 3권분립 원칙에 따른 권력분립제도와 사법 제도가 채택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한 축으로서 변호사제도도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것이 1949년 신 중국이 성립하면서 서구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 헌법체제를 추구하면서 변호사제도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식의 변호사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형사피고인을 위한 변호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공소변호인"이 인정되었습니다(1954년). 그리고 1969년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변호사는 반사회주의적인 자본주의 잔재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그나마 제한적으로 역할이 인정되던 공소변호인 제도마저 폐지되어 중국에서 변호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0여년에 걸친 문화혁명의 소용돌이가 끝나고 1979년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그에 따라 새로이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여기에 다시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가 법에 규정되면서 이를 위한 변호사의 권리와 절차에 대하여 정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다시 종전의 공소변호인과 유사한 변호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980년 변호사법의 모태가 되는 "변호사임시조례(律师暂行条例)"를 제정하여(1982. 1. 1.부터 시행) 변호사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고, 1986년부터는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였던 변호사의 신분제한을 해제하여 민간인으로서 변호사사무소의 개설을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난 1996년 변호사법을 제정하여 "변호사는 사회를 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인정하였다가 2007년에는 "관련법에 따라 변호사업종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뢰인을 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으로 개정하여 현대적 의미에서의 변호사제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신 중국에서의 변호사는 당초 형사피고인을 위한 변호업무를 행하는 국가공무원이라는 협소한 지위에서 시작하였다가 30년간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점차 그 업무범위와 신분적인 제한을 벗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2. 중국에서의 변호사 자격취득(변호사법 6, 7조)

중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9월 한번 실시되는 전국통일사법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중국변호사자격을 얻기 위한 사법시험은 198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전에는 "변호사자격특별인가제도"를 통해 각 성급(省級) 사법부서가 심사를 통해 일정한 학력과 법률지식을 구비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여 형사피고인에 대한 변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험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자격을 얻은 사람의 수가 약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6년 중국 사법부가 주관하는 전국적인 변호사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1995년에는 이와 별도로 법관과 검찰관을 선발하는 시험이 신설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법관 또는 검찰관시험의 응시자격이 서로 달랐고, 시험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법관과 검찰관 선발을 위한 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법에 따라 전국통일사법고시로 통합되어 법조인의 자격시험이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관이나 검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법고시를 통과한 후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중국변호사법은 일반변호사가 취급하기 어려운 특수한 영역에서는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개업특별인가제도(변호사법 제8조)"가 시행하여 변호사서비스 수요의 부족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에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성급 사법부서의 심사를 거쳐 "변호사업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법고시합격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시 심사를 거쳐 업무수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변호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3. 중국의 사법고시

중국 변호사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국통일사법고시"는 매년 9월 중에 2일에 걸쳐 객관식과 단문형 주관식으로 실시됩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약 35~40만 명이 응시하여 평균 60점 이상(600점 만점에 3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하는데, 합격률은 처음 실시된 2002년 약 6.6%였다가 점차 높아져 2005년에는 약 14.4%에 달하였고, 그 후에는 평균 1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41만 여명이 등록하였다가 실제로는 35만 여명이 응시하여 그 중 3만 6,000여명이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응시자의 경우, 변호사자격취득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 335점 이상 획득하면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률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의 사정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특혜를 입어 합격한 변호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소수민족은 자신의 언어로도 사법고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3년 사법고시의 경우 장족, 몽골족, 그리고 조선족언어(한글) 등 일부 소수민족 문자로 시험문제가 번역되어 출제되었고, 또한 이들 소수민족의 문자로 답안작성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는 조선족언어(한글)가 제외되었고 대신 장족, 몽골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4개 소수민족 언어로만 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동포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이 변화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중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국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법고시를 보기 위한 첫째 조건이 바로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1국가 2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홍콩과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홍콩국적(?)을 가진 사람들 일부가 사법고시에 통과하여 중국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국무원은 2008. 4. 15. 대만인들도 중국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대만정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 4. 중국 변호사 현황

1979년 변호사임시조례가 제정되었을 당시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고,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일종인 "법률고문처"에 소속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후 변호사법이 제정되어 변호사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해방(?)되면서 1992년 최초의 민간변호사사무소가 개설되었고, 북경과 상해 등 개방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점차 합작변호사사무소 또는 공동법률사무소가 늘어났습니다.

2006년 현재 전중국에 약 15만여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평균적으로 중국 인구 1만 명당 한 명의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그 수가 확장되었고, 변호사사무소도 전국적으로 13,000여 개가 넘습니다.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북경(1,300명당 1명)과 상해(1,800명당 1명)에는 거의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변호사의 숫자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따라 편차가 큰 것처럼, 변호사들의 소득 역시 편차가 커서 북경이나 상해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경우, 1년 수입이 25~30만 위안에 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의 경우 연간 수입이 1만 위안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 5. 변호사 업무의 현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변호사의 업무는 주로 형사피고인을 위한 변호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점차 민사 및 상사업무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사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되고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자문 및 금융, M&A 등과 관련한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송업무보다 법률자문 및 소송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양이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소송 180여 만건, 자문 520여 만건).

중국의 법률서비스가 주로 외국기업의 투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법률사무소의 수효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2007년 8월말 현재 전세계 19개 국가 또는 지역의 168개 법률사무소가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각지에 215개의

대표처를 설립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 법률서비스시장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 2004년부터 사법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어 지금까지 24명의 홍콩인이 중국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 중 4명은 실제로 중국 변호사사무소에서 변호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5개의 홍콩 변호사사무소가 중국 본토의 변호사사무소와 연합경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마치면서

중국에서의 변호사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변호사제도의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변호업무와 민사소송 등이 변호사들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개방이 가속화되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금융, 회사, M&A 등과 관련한 법률서비스수요가 크게 늘어나 법원이나 검찰에 진출하지 않고 곧바로 특정영역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변호사와 그 업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의 변호사들의 역할 또한 이와 비슷하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대형화, 전문화되지 못한 개인변호사사무소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사회적인 인식이나 대우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 제1의 수출강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중국은 변호사들에게도 새로이 열리는 블루오션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 또한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변호사 역할이 증대되고 사회적 공헌이 인정되면 변호사제도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인식도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N교수도 자녀에게 변호사가 되도록 권유해 보라는 까닭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JS-Horizon

(생생 러시아)

## 러시아주택분양 제도 개관 I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러시아주택시장(공급기준)은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경제위기 이후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7.24% 성장하였습니다. 상당 부분은 모스크바, 삐제르부르크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밀려드는 이주인구로 인해 대도시의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초래하였습니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고급주택시장에서의 가격하락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보다 나은 거주 환경을 요구하게 되고, 정부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주택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예산을 이용하고 주택개발을 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예산의 한계로 인해 노후주택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민간자본(개인 및 법인 포함)을 조달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들을 제정·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법률로는 2004년 12월 30일 N214-FZ "다세대주택 및 기타 부동산 지분건설 참여에 관한 연방법률(최근개정 2009년 7월 17일)", 1997년 7월 21일 N122-FZ "부동산 권리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등록법")(최근개정 2009년 7월 17일)", 1998년 7월 16일 N102-FZ "저당권법(최근개정 2009년 7월 17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의 부동산(주택 및 상업용 포함) 분양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은 2004년 12월 30일 N214-FZ "다세대주택 및 기타 부동산 지분건설 참여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지분건설법**", "**본 법률**")"입니다.

지분건설법의 목적은 지분건설계약(이하 "**지분건설계약**")을 근거로 다세대주택 및 기타 부동산(이하 "**다세대주택**")의 지분건설을 위한 개인 및 법인(이하 "**지분권자**")의 자금 조달 관계, 지분건설 대상에 대한 소유권 및 다세대주택 내 공동재산에 대한 공동지분소유권 관련 관계, 지분권자의 권리, 이익, 재산 보호 관계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일정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sup>1)</sup>에게는 특수한 종류의 채권-주택증서(Жилищный сертификат)<sup>2)</sup> 발행을 통한 다세대 주택건설을 위한 개인자금 조달도 허용됩니다.

이외에 법인(개인 사업자)이 개인 자본 참여 없이 건설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관계는 지분건설계약 뿐만 아니라 민법 및 투자법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라 규율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1명의 개인 자금이라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분건설계약을 기초로 하는 관계 성립이 되고, 지분건설법만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1. 자금 조달 절차

사업자(Застройщик)는 법인으로 소유권 또는 임차권 형태로 토지를 보유하고, 기취 득한 건축허가를 근거로 해당 토지에 다세대 주택<sup>3)</sup>을 건설하기 위해 지분권자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자입니다.

사업자가 다세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분권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i) 건축허가 취득, 언론매체 공고<sup>4)</sup>, 인터넷상의 게재 및/또는 ii) 사업신고서<sup>5)</sup> 제출 및 iii) 토지 소유권 및 임대권을 사업자가 국가등록 한 후에만 허용됩니다(지분건설법 제3조 1항).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사업자는 타인의 자금을 조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지분권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자는 지분건설계약을 근거로만 개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으로부터 다세대 주택건설을 위해 공동투자계약, 공동사업계약, 장래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계약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다만 법인과는 지분건설계약뿐만 아니라 러시아법률로 정한 기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6)

## [각주]

1) 소유 또는 임차권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의 다세대주택건축허가를 취득한 법인(채권 발행인).

이외에도 2004년 12월 29일 N188-FZ "러시아연방주택주거법" 및 2004년 12월 30일 N215-FZ "주택저축조합에 관한 연방법률"을 근거로 주택건설조합 및 주택저축조합에게도 채권발행을 통한 다세대 주택 건설용 개인자금 조달이 허용됩니다.

2) 러시아연방 유가증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인으로부터 주택증서 보유권자가 주택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한 문서

3) 거주용 및 비거주용을 포함합니다.

4) 본 법률 제19조 2항에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분건설계약은 언론매체 광고시점으로부터 14일 후 지분건설계약 체결을 원하는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언론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하고, 사업자 및 지분건설 대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6) 전제조건으로서 지분건설에 오직 법인들만이 참여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JS-Horizon

(주목! 이 판례)

##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흠결한 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손해배상

### 1. 사실관계

(1) 원고는 독일 기업과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특정 공법에 관한 기술협약을 맺어서 국내 독점사용권을 취득한 법인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분뇨처리시설보강 등 사업을 하는 데에 위 공법을 채택하기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설계작업이 완료된 후 원고와 위 공법을 이용한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원고는 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제작하며 만약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피고가 선발주 기계설비 대금 등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기술공동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맺었습니다.

(2) 이후 피고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해당 업체로부터 설계도서를 최종 보고받은 후 상급 지자체에 3차례에 걸쳐 사업 시설의 설치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반려되거나 보완요구를 지시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이 사건 기계장비의 주문·제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기계장비를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하였습니다.

(3)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독촉 받자 피고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통보하다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및 원심 법원의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귀책사유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기계대금 등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 나. 원심·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제작하며 피고 측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선발주 기계설비 대금 등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은 채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기계대금 등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만 달리 하였을 뿐, 기초 사실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과 판단을 달리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요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서를 보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나 이를 확정할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피고 측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고가 배상하기로 한 기계설비 대금 등 원고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특정할 기준이나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협약서는 구 지방재정법이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4. 평가

지방재정법 및 국가계약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는 종래에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30828 판결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입니다.

나아가,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강행규정으로 인정되는 국가계약법령의 범위와 의미를 달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2조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

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면서,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무 및 의무 위반시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백히 규정한 협약서가 작성된 이상, 정식 시설공사계약에 앞서 체결된 협약의 특성 때문에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협약이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 손해액을 특정하거나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려웠다는 구체적 사정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중 강행규정의 성격이 인정되는 '요건'과 '절차' 규정의 범위를 원심 법원 보다 더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 대하여 공법으로서의 강행규정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국가계약의 적법성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계약법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성질을 국가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계약법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다수). 국가계약법령에서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등).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까지 감안해 본다면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사인보다는 국가에 유리하게 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국가계약법령의 강행규정성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 특히 특정 국가계약의 효력을 어디까지 부인할지를 정할 때에는 계약의 효력이 부인됨으로써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형량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손해배상](#)

JS-Horizon

(최신법령)

## 1. 법인의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등

: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9898호, 2010. 1. 1. 시행)

1. 법인이 합병·분할하면서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나 주주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등을 신설하여, 합병·분할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병·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교부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승계받은 사업은 일정 기간 계속 보유·유지하도록 하여 합병·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법 제47조의2를 개정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이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미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허용됩니다.
3. 법 제55조 제1항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적용될 20%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22%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4. 법 제76조의8 제3항 등을 신설하여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간에 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다운로드 :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9898호, 2010. 1. 1. 시행\)](#)

## 2.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시 처벌 대상 확대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9895호, 2010. 3. 31. 시행)

1. 막대한 국가 이익의 손실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자도 이를 제 3자에게 누설한 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제18조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9895호, 2010. 3. 31. 시행\)](#)

## 3.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적용 배제 등

: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98호, 2009. 12. 21. 시행)

1.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업합병시 외부평가의무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를 신설하여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공모자금의 별도예치 및 인출·담보 제공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추고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시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을 정하였습니다.

4. 시행령 제207조 제3호 마목을 신설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외의 지분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도 연계 불공정거래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행령 제271조의2를 신설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5. 다운로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98호, 2009. 12. 21. 시행\)](#) 

(신년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2010년 신년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 그 동안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변함 없이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년하례 드립니다.

지난해 지평지성은 합병 2년차를 맞이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을 만들자는 기치 아래 항상 새롭게 도전하는 정신으로 앞서 나가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세계적 법률잡지인 IFLR1000의 2010년판 평가에서 기업자문 4개분야 전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성과가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더 뛰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점을 깊이 느낀 한 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평지성은 어느 해보다도 설렘과 긴장 속에서 2010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진정으로 앞서 가는 법무법인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더욱이 밖으로는 법률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고, 안으로는 변호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어려워진 환경에 적응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만, 젊은 법무법인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새해 지평지성은 종합법무법인으로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서도, 기초적인 법률상담과 통상적인 법무자문, 그리고 법률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고객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평지성 구성원 모두가 일반 민·형사, 회사, 금융, 조세, 행정, 도산, 지적재산권, 가사, 의료소송 등 제반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기존의 해외지사들(상해·호치민·하노이) 외에도 해외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환경·자원·에너지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법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항상 새롭게 도전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내부운영 뿐만 아니라 고객관계에서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윤리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진정한 '명문 로펌'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올 한 해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올림

JS-Horizon

(업무동향)

## 지평지성,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현대종합상사 매각관련 법률자문 제공

지평지성은 현대종합상사 매각과 관련하여 2009년 2월부터 현대종합상사의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는 법률자문사로 선정되어 M&A 매각과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대종합상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2009년 11월 30일 '현대종합상사 인수합병 관련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정식 부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12월 10일에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조선일보 - M&A 매물, 현대종합상사 팔듯 팔아라
- 매일경제 - 현대중공업, 현대상사 지분 50.36% 보유 신고
- 동아일보 - 현대중, 현대상사 인수 확정...2351억 본계약 체결
- 아시아투데이 - 현대중, 현대종합상사 인수 본계약 체결

### [담당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JS-Horizon

(업무동향)

## 지평지성, 포스코를 대리하여 케이파워 인수관련 법률자문 제공

지난 12월 30일, 국내 최초 민간 상업발전소인 케이파워(K-Power) 지분 35%를 매각 중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포스코를 우선협상자로 확정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지평지성은 본 건과 관련하여 포스코를 대리하여 케이파워의 BP지분 인수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머니투데이 - 포스코, 케이파워 35%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 [담당변호사]



총괄: 강성 변호사



총괄: 한승혁  
호주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황승화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정정태 변호사



길영민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이경호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



류용현 공인회계사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0년 시무식 개최



(사진 : 신년인사를 나누고 있는 지평지성 변호사 및 임직원)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1월 6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전체 변호사 및 전문가, 임직원이 모여 2010년도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호원·박동영·조용환·강성·양영태 대표변호사는 각각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기존의 해외지사들(상해·호치민·하노이) 외에도 해외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환경·자원·에너지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항상 새롭게 도전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자'고 신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시무식은 전체 변호사·전문가 및 임직원이 서로 신년인사를 나누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2010년 신년사](#)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 최승수 변호사, 소프트라인의 자회사 소프트웨어 자문위원으로 위촉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

2009. 12. 22. 지평지성 IP·IT팀의 최승수 변호사가 소프트라인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소프트웨어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소프트웨어는 2012년까지 총 300억 원을 영화, 드라마, 음악, 연극, 뮤지컬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JS-Horizon

## 최승수, 이소영 변호사, '저작권 교육연수사업'의 저작권 전문강사로 위촉



(좌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

(우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소영 변호사)

지평지성 IP·IT팀의 최승수, 이소영 변호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연수사업'의 저작권 전문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JS-Horizon

## 김성수 변호사, 2010년 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재위촉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지평지성의 김성수 변호사는 2009년에 이어 2010년 1월 1일부터 1년간 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재위촉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분야를 중심으로 노동부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JS-Horizon

## 임성택 변호사, 『2009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2009. 12. 17. 북한법연구회와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9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성공단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평지성 소송파트의 임성택 변호사가 '개성공단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 부동산 경매 등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의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JS-Horizon

## 임성택 변호사,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기자회견' 참석 및 토론

2009. 12. 16.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가 탈시설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장애인을 사회복지시설에 격리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꽃동네 등에 거주하는 세 명의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 보호가 아닌 자립생활 방식의 서비스변경신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JS-Horizon

## 김범희 변호사, 로앤비 기업법무과정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 브랜드 분쟁'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범희 변호사)

2009. 12. 18. 지평지성 IP·IT팀의 김범희 변호사가 로앤비가 주최한 기업법무교육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실무 II'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린 기업법무교육 과정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의 관리 방안, 상호나 상표 등의 브랜드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법령과 이론을 정리하고 다양한 사례의 판결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유용한 팁을 유관기관이나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지난 10월 강의하였던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과 함께 로앤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박성철 변호사,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법무 담당자 워크숍』 참석 및 발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성철 변호사)

지평지성의 박성철 변호사가 2009. 12. 11. ~ 12. 12. 양일간 제주대학교 연수원에서 진행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법무 담당자 워크숍』에서 '국가소송과 소송수행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우수사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 법무법인 지평지성

###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7, 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599

###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